

#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연결법인별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4쪽 중 제1쪽)

연결사업연도	연결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	-------	---------

## 1.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

① 과세표준		세율	② 세액
구분	금액	20%	
③ 법인세 감면세액			
④			
⑤ 소계			

## 2.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

⑥ 구분	⑦ 감면내용	⑧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	코드	⑨ 감면세액 (소득금액)	비고
⑩ 비과세	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604	( )	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
	㉒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	제13조의4	62Q	( )	
	㉓		606		
⑪ 소득공제	㉔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	제55조의2제4항	460	( )	별지 제7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
	㉕ 주택임대소득공제 (연면적 149㎡ 이하)	제55조의2제5항	463	( )	
	㉖				
	㉗		458		
⑫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			6A1		(과세표준+소득금액) X세율-산출세액
⑬ 세액감면	㉘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	제21조	123		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란 해당 금액
	㉙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	제22조	103		
	㉚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92		
	㉛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	구 제33조의2	13A		
	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	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·제40조	13B		
	㉝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	제62조제4항	13F		
	㉞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	제85조의2	11A		
	㉟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L		
	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제85조의6	11M		
	㊲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	제96조	13I		
	㊳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제96조의2	13N		
	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8	181		
	㊵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9	182		
	㊶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1호	197		
	㊷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2호	198		
	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3호	1D2		
	㊹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121조의17제1항 제4호	1D3		
㊺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121조의17제1항 제5호	1D4			

⑫9	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 121조의17제1항 제6호	1D5	
⑫7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 121조의17제1항 제7호	1D7	
⑫8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 121조의17제1항 제8호	1D6	
⑫2	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제 121조의17제1항 제9호	1D8	
⑬0	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제 121조의17제1항 제10호	1D9	
⑬1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0제1항	11C	
⑬2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121조의21제1항	11G	
⑬3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 121조의22	17A	
⑬4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 121조의22	17B	
⑬3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 121조의22	13H	
⑬6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 121조의22	13V	
⑬7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8	13P	
⑬8	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9	13Q	
⑬9	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 121조의17제1항 제1호	13R	
⑭0	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 121조의17제1항 제3호	1E1	
⑭1	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 121조의17제1항 제5호	1E2	
⑭2	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 121조의17제1항 제8호	1E3	
⑭3	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제 121조의17제1항 제9호	1E4	
⑭4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1제1항	13U	
⑭5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121조의20제1항	13T	
⑭6	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	제 121조의33	1D1	
⑭7	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	제 121조의33	1C1	
⑭8			164	

별지 제8호서식(감)의  
④란 해당 금액

⑭ 세액 공제	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	구 제5조	131	
	⑮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7조의4	14Z	
	⑯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	제8조의3제1항	14M	
	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제8조의3제2항	18D	
	⑱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3항	18L	
	⑳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제8조의3제4항	18R	
	㉑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	제8조의3제5항	15B	
	㉒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3	14T	
	㉓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제12조의4	14U	
	㉔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	18E	
	㉕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13조의2제2항	15C	
	㉖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제19조	18H	
	㉗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2호	177	
	㉘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3호	14A	
	㉙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4호	142	
	㉚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5호	136	
	㉛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	구 제25조제1항제6호	135	
	㉜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4	14B	
	㉝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구 제25조의5	18B	
	㉞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기본공제)	제25조의6	18C	
	㉟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추가공제)	제25조의6	18B	
	㊱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8	15A	
	㊲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25조의7	181	
	㊳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	제26조	14N	
	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	제29조의2	14S	
	㊵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3제1항	14X	
	㊶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제29조의3제2항	18J	
	㊷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4	14Y	
	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5	18A	
	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제29조의7	18F	
	㊺ 통합고용세액공제	제29조의8	18S	
	㊻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	제29조의8	1B4	
	㊼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복귀)	제29조의8	1B5	
	㊽ 제3자 몰류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14	14E	
	㊾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1항	141	
	㊿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2항	14K	
	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	구 제104조의18제4항	14R	
	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	제104조의22	140	
	③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25	14P	
	④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제126조의7제8항	14V	
	⑤ 금사업자와 스캐핑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제122조의4	14W	
	⑥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제104조의30	18M	
	⑦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제104조의32	10C	
	⑧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35	1F1	
	⑨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제13조의3제1항	18N	
	⑩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	제13조의3제3항	18P	
	⑪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96조의3	10B	
	⑫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제99조의12	18Q	
⑬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3W		
⑭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제24조	1B1		
⑮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3X		
⑯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제24조	1B2		
⑰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Y		
⑱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3		
㉑ 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3Z		
㉒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제24조	1B9		
㉓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제104조의15	186		
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제25조의7	187		
㉕		165		
⑮ 감면세액 합계				
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 
별지 제8호서식(갑)의  
④ 감면(공제)세액란  
및 ⑦ 공제세액란의  
해당 금액

### 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.
  2.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: ⑮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 3. ⑫ 비과세·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⑨ 감면세액란: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(개별귀속액)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(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)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
  4. 그 밖에 ⑩ 비과세, ⑪ 소득공제, ⑬ 세액감면 및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※ 근거 조항 중 “구” 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.